전 주 지 방 법 원

이행권고결정

사	건	2020가소 물품대금
원	고	ㅡ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피	고	1. 유한회사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 대표이사 2.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
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.

이 행 조 항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2020. 2. .

사법보좌관

※ 1.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. 피고가 **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**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
2.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자세한 내용은 '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' 참조)

소 장

원 고 -*******)
전주시
송달주소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(만성동 1366-9) (송달영수인 : 전종필)
(휴대전화: -**** 이메일: t)

피 고 1. 유한회사
전북
대표이사
2.
주소불명
(휴대전화: **)

물품대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.부터 까지는 의, 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3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가. 원고는 라는 상호로 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이고, 피고 은 이라는 상호로 로부터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사람인데, 원고는 2018. 월경에 피고 의 으로 되는